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백상훈 소유물건(2025타경10869)

의뢰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황승환

감정서번호 : W250714-00-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D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2-2261-0199 FAX. 0505-300-0199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재훈

정재훈 

감정평가액	삼억육천사백만원정 (₩364,000,0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황승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백상훈 (2025타경10869)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7. 15	2025. 07. 14 ~ 2025. 07. 15	2025. 07. 16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36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6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원리치타운' 제103동 제4층 제402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7월 15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7월 14일 ~ 2025년 7월 15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 ① 미상임.

3.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구분 등기되어 있고 구조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 건물임.
- ②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층·호수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에 의거하였음.
- ③ 집합건물은 일반적으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됨으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상 귀 원요청에 의거 토지와 건물로 배분하여 명세표에 표기하였음.
- ④ 본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 표제부 ' 란에 ' 별도등기 있음 (1 토지 (을구 1 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 ⑤ 본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을 못 하였는바 ,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 탐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현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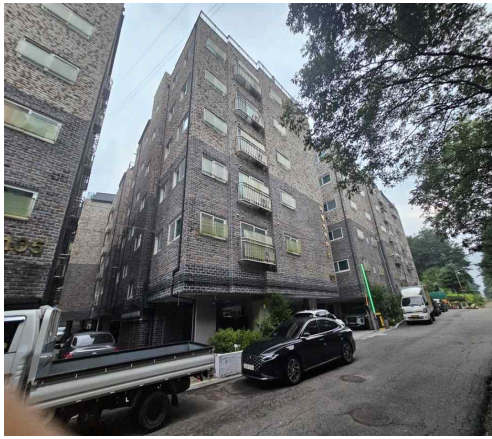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건 물 명		다원리치타운 제103동 제4층 제402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 리치타운 제103동	도시형생활 주택 (단지형다 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1길 99 (오류동)			지1 1층 2층 ~ 5층 각 6층 옥탑1층	275.65 16.23 128.16 129.42 22.59			
	상동	358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11.8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2호	44.72	44.72	364,000,000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 부분 포함 79.94㎡
				소유권 1.x -----	29.57 x----	29.57		
				대지권	2,511.8			
						토지 · 건물 토 지: 건 물:	배분내역 254,800,000 109,200,000	
		합 계					₩364,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의 개요

소재지·건물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3동 제4층 제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1길 99 (오류동)		
	주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15개호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20.09.16	
	건물규모	층수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933.94 m ²
비고	-		

2. 각 호별 상세 개요

일련 번호	동/ 층/호수	용도	건물면적(m ²)			대지권 (m ²)	비고 (전용률 (%))
			전유	공용	분양		
가	103동/ 4/402	다세대주택	44.72	35.22	79.94	29.57	55.94
합계 (1개호)			44.72	35.22	79.94	29.57	-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면적으로, 시장의 통상적인 분양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이하 동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text{감정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치}$$

2. 감정평가시 고려사항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 층/호	용도	면적(m ²)		거래가액(원) (원/전유m ²)	거래시점 (사용승인)	비고
				전유	분양			
#1	오류동 6-1**	101/ 3/30*	도시형생 활주택(단 지형다세 대주택)	28.87	36.99	275,000,000 (@9,530,000)	2024.03.30 (2022.06.13)	-
#2	오류동 19-**	한백아트/ 3/30*	도시형생 활주택(단 지형다세 대주택)	29.98	33.81	297,000,000 (@9,910,000)	2022.05.23 (2014.09.19)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동일·유사한 집합건축물 내의 거래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사례 #1 > : 일련번호 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사정보정

의 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4) 시점수정

(가) 적용기준

■ 비교 거래사례#1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아래 표 참조)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시군구	상승률 (시점수정치)	산출근거			
		거래시점 / 기준시점		2024.03.30/ 2025.07.15	
서울 강남지역 서남권 연립다세대	1.210% (1.01210)	매매가격 지수	사례거래 당시 지수	2024.02	99.2
			기준시점 당시 지수	2025.06	100.4
		산식		$1 + (100.4 - 99.2) / 99.2$ ≈ 1.0121	

※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해당월 지수가 미발표시 가장 최근 발표된 지수를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일련번호 가] / 비교사례 #1]

조 건	세부항목(주거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0.91	본건은 사례대비 상업시설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3	본건이 사례 대비 단지의 규모 등에서 우세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0.90	본건이 사례 대비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서 열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감정평가목적 및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고려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누계)		0.844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본 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단가) 산정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일련 번호	동/층 호수	전유 (사정) 면적(m ²)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전유m ²)
			일련 번호	단가 (원/전유m ²)						
가	103/4 /402	44.72	#1	9,530,000	1.000	1.01210	0.844	8,140,000	364,020,800	364,000,000
합계		44.72	-	-	-	-	-	-	-	36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참고가격자료

1.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호	용도	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원/전유m ²)	기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전유	분양			
(1)	오류동 35* 10*/2/20*	도시형생 활주택(단 지형다세 대주택)	38.61	68.82	320,000,000	2025.02.10 (2020.09.16)	법원경매
					(@8,290,000)		
(2)	오류동35* 10*/4/40*	도시형생 활주택(단 지형다세 대주택)	39.01	70.54	320,000,000	2024.03.14 (2020.09.16)	법원경매
					(@8,200,000)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임.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 경매동향

용도별	서울 구로구 2024년 02월 ~ 2025년 01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다세대	72,314,042,800	60,171,943,454	83.2	1,130	266	23.5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평가대상		전유면적(㎡)	대지권(㎡)	감정평가액(원)
가	제103동 제4층 제402호	44.72	29.57	364,000,000
합계		44.72	29.57	364,000,000

결정의견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 참고가격자료를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

2. 기타 참고사항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남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7호선)천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 중 제103동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북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오류동 35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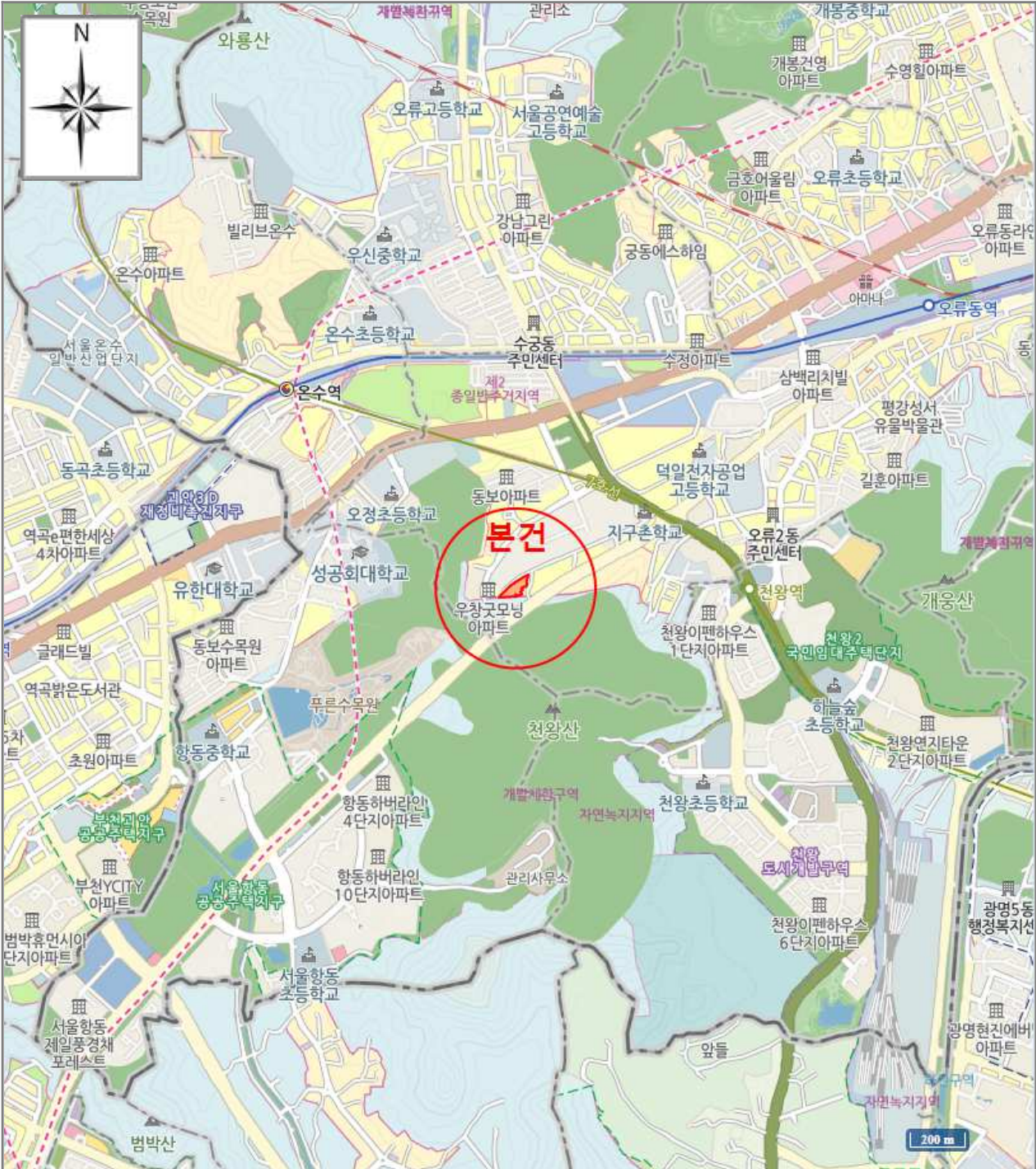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 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여부및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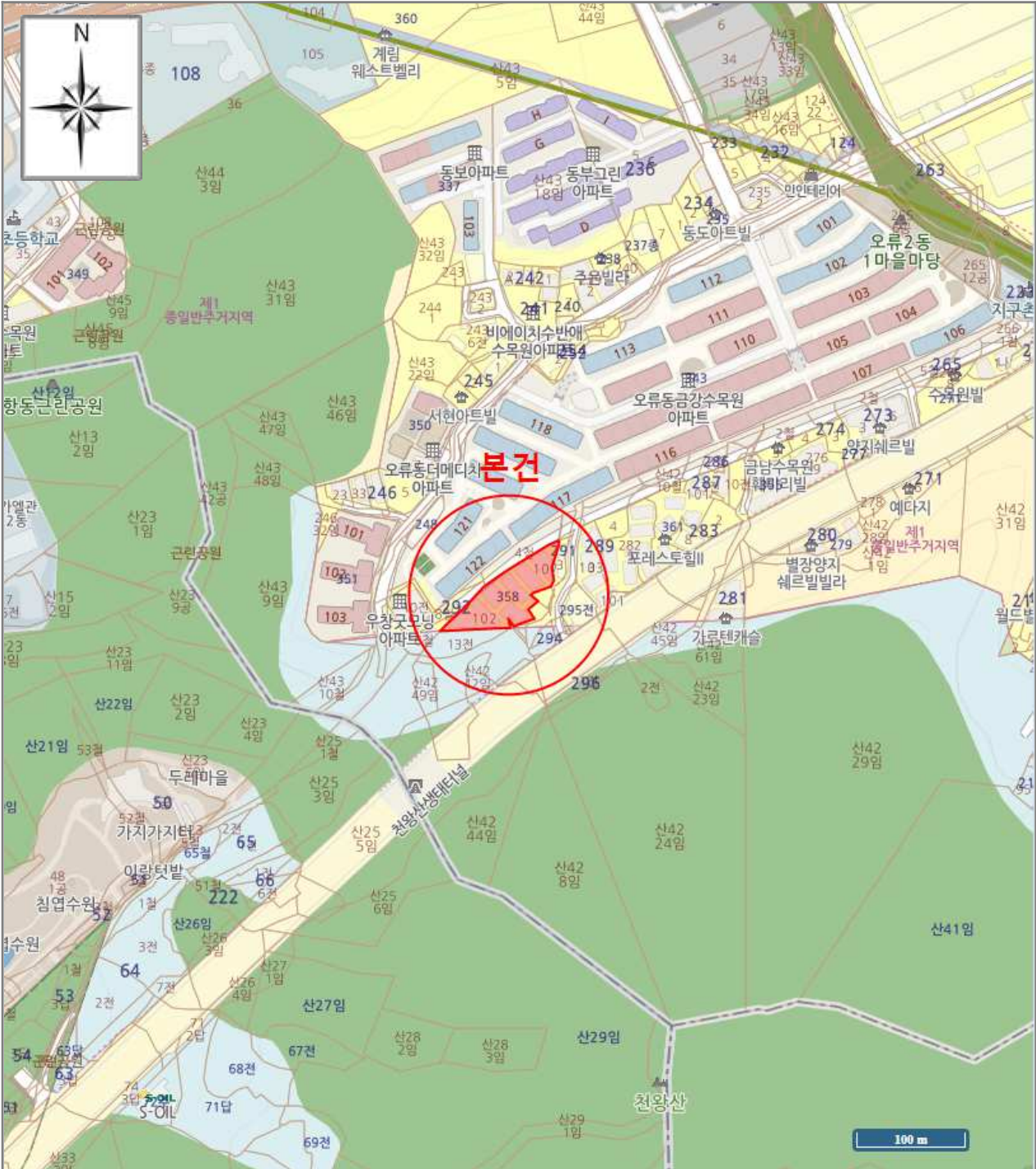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3동 제4층 제402호
-----	--



[범례]	■ 본 건	■ 평가사례	■ 거래사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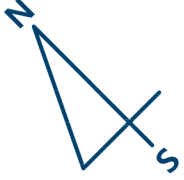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다원리치타운 제103동 제4층 제4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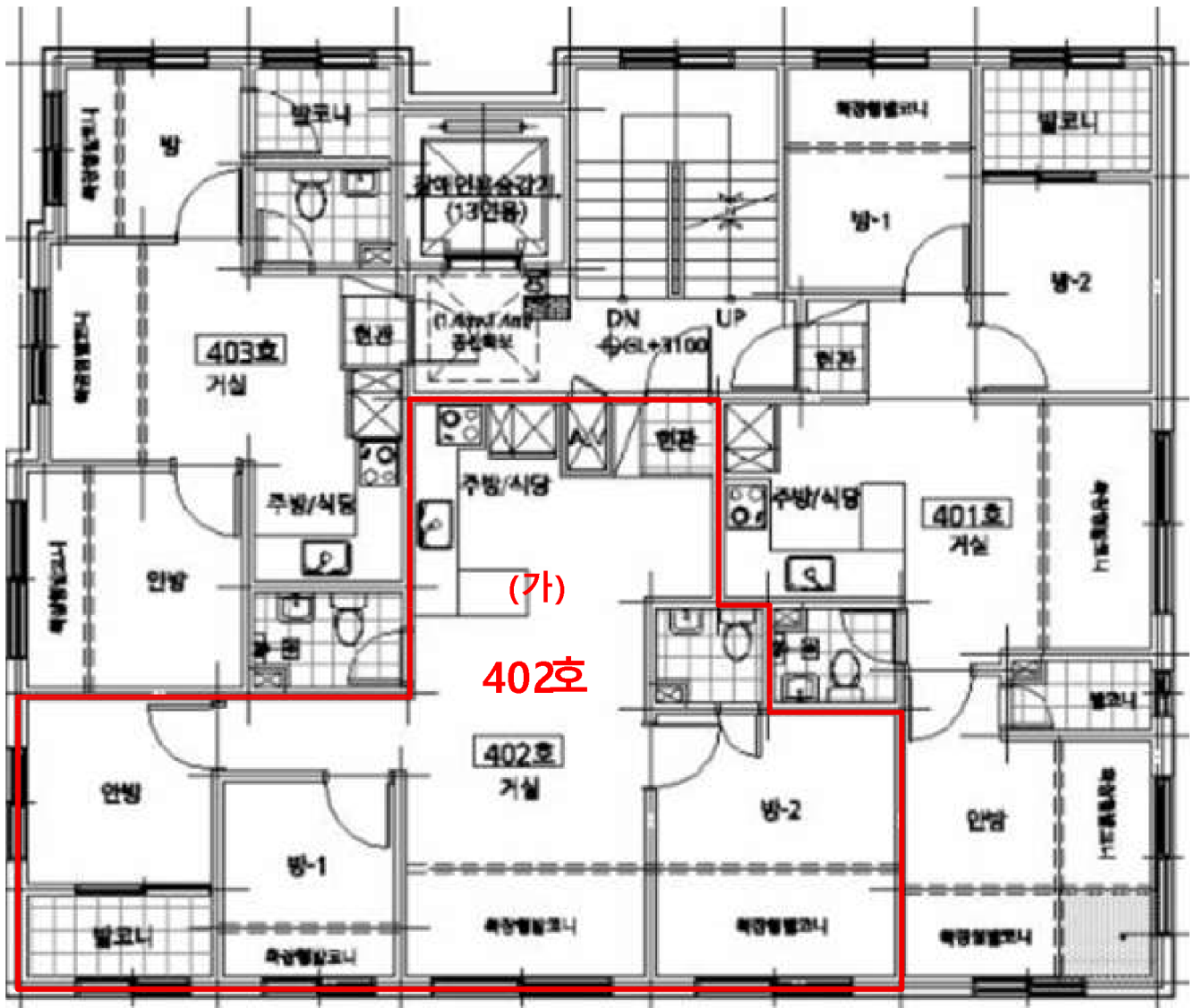


[범례]	■ 본 건	■ 평가사레	■ 거래사레
--------	-------	--------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다원리치타운 제103동 제4층 제402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58



본건 전경



본건 주위 환경



본건 주출입문



본건 주차장